

## 의료정보 보호 및 보안 (실습)서약서 - 실습생용

본인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실습기간 동안 환자의 진료와 관련되어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기록과 영상, 수기의무기록 의료정보와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2.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2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4. 병원내의 모든 의료정보와 의료자원은 병원 당국이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만 접근 및 사용하며, 허락 받은 사용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5. 병원내의 모든 의료정보와 의료자원은 업무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6. 병원내의 모든 의료정보와 의료자원의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책임 있고 윤리적인 태도로 사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7. 인가 받은 사용자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개인 비밀번호(전자서명인증서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의 ID에서의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8. 실습 시 사용한 개인건강정보(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명)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 및 수기 의무기록은 사용 후 즉시 폐기한다.

본인은 의료정보 보호 및 보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책임과 권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는다.
2. 공개된 장소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대화하지 않는다.
3. 환자 개인신상 정보가 모니터상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자리를 이탈할 경우 log-out 또는 화면보호기를 시행하거나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4. 공개된 장소 게시물에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진단명을 함께 게시하지 않는다.
5. 환자정보가 포함된 출력물 또는 화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클리어데스크 및 클리어스크린을 수행한다.
6.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는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로 유지한다.
7.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요청에 적극 대응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8.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경우 해당부서 팀장과 상의 후 의료정보관리팀장(원내 : 7101) 또는 전산운영팀장(원내 : 7651)에게 보고한다.

학 교		실습기간	~
학 과		학번	
성 명		실습담당책임자	소속:간호처 직책 : 교육수간호사
연 락 처			성명 : 최연호

작성일자: 2015 년      월      일      성명:                      ( 서명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 귀하**